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4
----------	-----

2020. 10. 23.(금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나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- 라. 상정일자 : 제386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0년 10월 15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상정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운용기금 부족으로 적립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며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0년”에서 “2025년” 까지 5년 연장(안 제3조)
- 운용기금 부족에 따른 적립기금의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입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, 안 제10조)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(안 제5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
-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2013년 대비 현재 이자수입은 60%,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는 58%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##### 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(2020년 → 2025년까지)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함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(20.9.11.)

#### [ 기금의 존속기한 ]

##### 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○ 운용기금 부족에 따른 적립기금의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익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, 안 제10조)

-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 서며 세계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으며, 이렇게 추락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음
-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적금으로 운영 중이며,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매년 사용가능한 운용기금은 줄어들고 있음

[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적립금 현황	5,669,392	5,992,824	6,308,799	6,318,645	6,331,148	6,342,576	6,356,567
이자율	2.86%(신한)/ '12.7.2~'15.7.2 (100%)		1.41%(신한)/ '15.7.2~'18.7.2 (49.3%)			1.62%(신한)/ '18.7.2~'21.12.31 (56.6%)	
이 자 수 입	163,342 (100%)	170,505 (104.4%)	138,317 (84.6%)	88,846 (54.4%)	88,979 (54.4%)	94,861 (58%)	102,836 (63%)
고 유 사업비	168,865 (100%)	152,110 (90.1%)	127,390 (75.4%)	84,000 (49.7%)	83,000 (49.1%)	88,500 (52.4%)	98,700 (58.34%)

※ 이자수입 :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2013년 대비 63% 수준

※ 고유사업비 :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2013년 대비 58% 수준

○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기금운용관 변경(안 제5조 및 안 제13조)

-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
-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

○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4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변경

## [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]

### 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,
- 운용기금의 부족으로 농업인단체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적립기금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익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단체별 총 적립기금의 3% 이내로 상한을 두어 무분별한 원금 사용으로 인한 원금고갈 문제를 차단 할 수 있어 운용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
- 다만, 단체별 3%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적립기금의 비율에 맞춘 적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을 보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20년”을 “2025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운용기금의 결산잔액

제4조제2항 중 제1호를 제2호로, 제2호를 제3호로, 제3호를 제4호로,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. 적립기금 다만, 단체별 총 적립금의 3%이내

제5조제2항 중 “15인”을 “14명”으로 하고, “농업기술원장”을 “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

제10조의 제목 “(기금의 구분관리)”를 “(기금의 관리)”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원장”을 “기술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3월”를 “80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까지</u>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</b>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제2항의 수익금</u></p> <p>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</p> <p>2.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</p> <p>3.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</p> <p>4. 기타 지원금</p> <p><b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</b> 생략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<u>농업기술원장</u>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<b>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025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b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</b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운용기금의 결산잔액</u>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적립기금 다만, 단체별 총 적립금의 3%이내</u></p> <p>2. (현행 1호와 같음)</p> <p>3. (현행 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4호와 같음)</p> <p><b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</b> 생략</p> <p>② ----- <u>14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</u>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<u>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술 지원국장,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1. <u>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기금의 구분관리)</b>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적립기금 증식을 위하여 당해 연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의 10%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10조(기금의 관리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삭 제)</p>
<p><b>제13조(회계관리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<u>농업기술원장</u>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 <p>③ ~④ (생략)</p>	<p><b>제13조(회계관리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기술지원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③ 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기금결산)</b> ① 농업기술원장은 출납폐쇄 후 <u>3월</u>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14조(기금결산)</b> ① ----- ----- <u>8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</b>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</b> ----- ----- ----- ---- 「<u>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